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합518641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1. A 주식회사

2.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변론 종결 2022. 10. 14.

판결 선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그 대표청산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8. 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회사 D 발행주식

전부(147,000주)를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대상주식의 매매 및 매매대금

1.1 대상주식의 매매

매수인(피고, 이하 같다)은 매도인(원고들, 이하 같다)으로부터 대상회사(주식회사 D, 이하 같다)의 발행주식 147,000주의 100%인 147,300원주를 매수합니다.

1.2 매매대금

본 계약에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상회사 주식 매매대금은 45억 원(= 주당 30,612원 * 147,000주)으로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10억 원입니다.

계약금(계약체결시점)	2018. 2. 8.	1,800,000,000원
중도금(실사완료시점)	2018. 2. 22.	1,700,000,000원
잔금	2019. 2. 8.	1,000,000,000원
		4,500,000,000원

제2조 매매계약 체결의 전제 및 선행조건

1)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가. 매도인의 돌발채권, 부실채권 등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나. 공장 건립, 폐기물 처리, 각종 민원 처리

제11조 특약(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재취득)

매수인은 본 계약 진행 말미에 대상회사의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는바,

해당 허가는 본 계약 체결의 주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매도인이 해당 허가를 재취득, 원래대로 복원한다는 전제로 본 계약의 체결을 진행한 것이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2019. (공란) 일까지 허가 재취득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은 허가 재취득 약속이 이행된 시점 이후에 진행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잔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미지급 잔금이 8억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따라 미지급 잔금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한 미도래 또는 조건 불성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의 폐기물처리업허가 재취득의무는 잔금 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11조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까지 폐기물처리업허가 재취득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잔금

지급은 그 약속이 이행된 시점 이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던 점, ② 폐기물처리업허가는 주식회사 D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그 재취득 여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중요사항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폐기물처리업허가 재취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에는 원고들의 폐기물처리업허가 재취득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들이 폐기물처리업허가 재취득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원

판사이종찬

판사전승환